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호서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건학 이념과 벤처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체, 정부(출연 연구 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며, 산학협력을 위한 투자, 지원 및 공간임대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9)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번지 대학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등)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9)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이전, 사업화 촉진 및 보상에 관한 업무(대학 소속의 자가 포함되어 발명한 자유발명에 대한 수탁관리 포함)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산학협력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홍보
6.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및 자체 사업의 기획·추진
7.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장비, 기술, 인력, 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업무
8. 대학 내 벤처·창업(실험실 창업, 학교기업 등)의 촉진에 관한 업무
9. 대학의 교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협력연구소(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 창업 집적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입주 기업(연구소 포함)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10.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2.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업무
13.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간의 임대 및 지원 업무
14. 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사업장 법정 교육, 직무 교육 및 화학사고 예방 지원 업무(신설 2018.10. 4)
15. 기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업무 일체

제 2 장 조 직

제5조 (이사)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

제6조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해지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행정사무와 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정관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원 및 직원 등의 임면) ① 산학협력단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구원과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용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대학의 교육,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2인을 두며, 대학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 (재산의 종류)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된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3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단의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된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8.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9. 이자수입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입금

제1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직원, 연구원, 대학 소속교직원 및 학생 등) 또는

산학협력관련 우수성과 도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8.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9.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11. 정관 제4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 15조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임명은 단장이 한다.

제 17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 지급에 의할 수 있다.

제 18조 (회계처리 등)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개정 2021. 6. 1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 19조 (예·결산자문기구)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예·결산자문기구로 정한다.

제 20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총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 21조 (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6. 10)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총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22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 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직원, 연구원, 대학 소속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 보상금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변경 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해산)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26조 (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 칙(2008.8.18)

① (이전 정관의 폐지)이 정관 이전의 정관은 폐지하기로 한다.

②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전 정관의 폐지) 이 정관 이전의 정관은 폐기하기로 한다.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제1조(목적)과 제4조(업무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제1조(목적)과 제4조(업무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6. 10.)

① (이전 정관의 폐지) 이 정관 이전의 정관은 폐기하기로 한다.

② (시행일) 이 정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제1조(목적)과 제4조(업무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